

충청북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촉진 지원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이양섭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9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8일

3. 제안이유

- 우리도의 농수산물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수산물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운용 중인 조례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이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(안 제2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 제정당시 상위법이었던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이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으로 개정(2015. 12. 23. 시행)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나. 주요 검토내용

- 안 제2조에서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으로 표기된 법령 명칭을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으로 바로잡았습니다.
- 이는 2015년 당시 정부의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의 제정과 함께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이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2015. 6. 22. 타법개정)으로 개정된 것을 이 조례안에 담은 것입니다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과거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합니다.
- 또한, 정확한 인용 조문의 사용으로 충청북도의 입법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